

문서번호	BSKS-1-1-40
제정일자	2008.05.20.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1/13

2008.05.20.제정 2013.04.25.개정 2014.02.01.개정 2020.09.25.개정 2021.12.22.개정 2022.04.15.개정 소관부서 교무처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경상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교 내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교직원 에 대하여 적용하다.
-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 부정행위 검증에 대해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6. 그밖에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교, 교육부 또는 전문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자의 제보나 본교, 교육부 또는 전문기관 등의 인지로 연구부 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



문서번호	BSKS-1-1-40
제정일자	2008.05.20.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2/13

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 니한다.

-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⑦ "전문기관"이라 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 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의 2(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2.>

-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 정·존중
-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 계 명시
-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4조의 3(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연구자는 특수관계인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2.>

- 1. 연구자는 연구 시작 전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을 대학 및 공동연구자에게 공개해야 하며, 연구 신청 시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 공개 양식(별지 2호 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 2. 연구자는 특수관계인이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노트에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3. 연구자는 공저 논문 발표 전 소속 기관과 해당 학술단체에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하며, 특수 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사전 공개 양식(별지 3호 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 4. 특수관계인이 참여한 연구의 연구결과 보고 시, 공저자로서의 창작적 기여에 대한 실질적인 증명 기준(별지 4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문서번호	BSKS-1-1-40
제정일자	2008.05.20.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3/13

제5조(연구윤리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연구윤리 ·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에 대한 승인과 조사결과의 심의에 관한 사항
-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6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수 있다.
- 제7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 제8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무부장으로 한다<개정 2020.09.25.>.
-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자신의 연구결과 사용)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연구논문 등 작성 시 이전에 발표하지 않은 자신의 연구결과를 사용
 - 2.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출간하여 본 인의 연구결과 또는 성과·업적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 3.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용사실을 표시하거나, 처음 게재한 학술지 등의 편집자 또는 발행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
- 제11조(연구윤리서약서) 연구자는 연구의 전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연구자는 연구과제 수행 전 『[별지 1] 연구윤리서약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연구윤리에 대한 교육) 총장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 부정행위에 대응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일정기간 연구윤리 교육을 미이 수한 자에게 연구과제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제13조(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총장이 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조사"와 "본조



문서번호	BSKS-1-1-40
제정일자	2008.05.20.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4/13

사". "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총장은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필요한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 ③ 총장은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예비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 제14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예비조사 기구의 형태는 총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제4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③ 총장은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때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④ 총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제19조 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5조(예비조사 결과) 예비조사 결과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총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제16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서, 제17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본 조사의 결과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제22조 제1항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17조(조사위원회 구성 및 역할) ① 총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부정행위의 규모·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의 검증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사위원회 또는 검증기구를 구성할 때에는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 및 본교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
 - 2. 본교 소속이 아닌 외부인 30% 이상
 - ③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조사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의한 부정행위의 사실여부를 조사한다.



문서번호	BSKS-1-1-40
제정일자	2008.05.20.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5/13

- 제18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 1. 피조사자와 사제지간이거나 연구를 공동으로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 2. 피조사자와 친족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
 - 3. 그 밖에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 ② 총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 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 ③ 조사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19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조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제20조(제보자의 권리보호) ①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총장은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총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③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④ 총장은 제보자가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⑤ 제보자는 총장에게 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21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총장은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②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6조 제2항 규정의 각 호의 사항이 발견되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될 수 있다.



문서번호	BSKS-1-1-40
제정일자	2008.05.20.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6/13

- ③ 피조사자는 총장에게 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2조(부정행위 검증 원칙)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② 총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보 받은 사항에 대한 부정행위 여부의 판단은 해당 연구가 수행되거나 결과물을 제출 또는 발표할 당시의 관련 규정 또는 학계·연구계의 통상적 판단기준에 따른다.
- 제23조(판정) ① 판정은 총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총장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24조(이의신청 등)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5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심의) 본조사 결과보고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 4 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이후의 조치

- 제26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① 총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을 받은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 종료 후 각각 10일 이내에 해당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장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해당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
 -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3.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③ 제1항의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서번호	BSKS-1-1-40
제정일자	2008.05.20.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7/13

- 1. 제보의 내용
- 2. 해당 부정행위
- 3.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파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5.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6. 관련 증거 및 증인(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7.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 8. 검증결과에 따른 처분요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제27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 총장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 서의 형태로 교무처에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25.>
 - ②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 ③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28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위원회는 총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총장은 승진,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교직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29조(소관처)**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연구윤리 관련 업무의 소관부서는 교무처로 한다.<개정 2020.09.2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BSKS-1-1-40
제정일자	2008.05.20.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8/1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2014.02.01.)에 의하여 『교무처』를 『교학처』 로 『산학처』를 『산학·취업처』로 명칭 변경하고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2020.09.25.)에 의하여 『교학처』를 『교무처』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2022.04.15.)에 의하여 『학생산학취업처』를 『산학처』로,『기획처』를 『기획실』로,『입학홍보처』를 『입시홍보실』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문서번호	BSKS-1-1-40
제정일자	2008.05.20.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9/13

[별지 1]

연구 윤리 서약서

- 연구책임자:
- 과제 번호:
- 연구과제명:
- 연구 기간:
- 지원 기관:

본인은 위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연구제안, 연구의 수행, 논문작성,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부산경상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소 속:

서 약 자 : (인)

부산경상대학교 총장 귀하



문서번호	BSKS-1-1-40
제정일자	2008.05.20.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10/13

[별지 2]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 공개 양식

■ 연구과제 개요 (연구계획서 기준)

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연구비 지원 (지원기관명)		(지원액)	원	
근 기 의 기 된	※ 별도로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가 아니면 기재 불필요			
	- 참여연구원 A(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참여 연구원	구원 - 참여연구원 B(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 특수관계인(성	명/소속기관/부서명/직	위)	

■ 특수관계인의 유형 (해당하는 모든 란에 √)

가족(4촌 이내)		미성년자				
배우자	자녀	기타	지인 자녀 R&E 프로그램 참여자 기타			

■ 특수관계인의 연구과제 참여 목적 (해당 < >란에 √ 표시 후 간략히 기술)

1. 단순히 연구에 참관하고 배우기 위한 것	2. 연구에 참여하여 본인의 아이디어 구현
(논문 작성과 무관함) < >	(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 참여) < >

■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특수관계인의 역할 및 활동계획

교무처장 귀하



문서번호	BSKS-1-1-40
제정일자	2008.05.20.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11/13

[별지 3]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 양식

■ 연구과제 개요 (연구계획서 기준)

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연구비 지원	(지원기관명)	(지원액)	원	
원무미 시천 ※ 별도로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가 아니면 기재 불필요				
	- 참여연구원 A(성명/소속기관/특	루서명/직위)		
참여 연구원 - 참여연구원 B(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 특수관계인(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 특수관계인의 유형 (해당하는 모든 란에 √)

가족(4촌 이내)		미성년자				
배우자	자녀	기타	지인 자녀 R&E 프로그램 참여자 기타			

■ 특수관계인과의 공저 논문 발표 계획

학술대회((Conference)	학술지(Journal)			
국내	국외	국내	국외		
<발표 예정 학술대회 개	요>	<게재 예정 학술지 개요>			
- 학술대회명 :		- 학술지명 :			
- 발표논문명 :		- 논문명 :			
- 개최지 및 개최기간 :		- 논문 투고 예정일 :			
- 참여저자 :		- 참여저자 :			

특수관계인이	상기	논문의	저자로 3	포함되어야 하	는 사유			
※ 특수관계인이] 상기	논문 성	과 창출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위주로	기술할	것



문서번호	BSKS-1-1-40
제정일자	2008.05.20.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12/13

■ 특수관계인이 상기 논문의 저자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유

※ 주의사항 : 저자 요건을 갖춘 개인만 기재함. 즉, 저자 표시 대상 개인과 연구과제 계획서에 표기된 참여연구원이 일치할 필요가 없음.

구분	연구기획 (연구 설계, 작업의 개념 정립 등)	연구수행 (연구데이터 수집/분석/해석, 기본 원고 작성 등)	원고초안작성 (중요한 내안을 초안하거나 비판적으로 개정)	최종원고확정 (논문 최종 검토 및 승인)
저자 A				
저자 B				
특수관계인				

■ 저자별 기여율 산출 및 확인 내역 <저자 간 합의 사항>

구분	연-	구기획	연-	구수행		1초안		종원고 -	전체	기여도	확인 서명	 녕
					~~	∤성	3	학정	- '		, – ,	
저자 A	()%	()%	()%	()%	()%		
저자 B	()%	()%	()%	()%	()%		
특수관계인	()%	()%	()%	()%	()%		
계	30	%(*)	409	%(*)	209	%(*)	10	%(*)	100	%(*)		

^{*} 항목별(연구추진 단계별) 기여율 가중치는 연구기관이나 연구과제의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함

■ 연구윤리 확인내용

항목	내용 (예시)
저자 임의변경과	저자 일동은 저자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제1저자는 저자A, 공저자는
부정한 추가 방지	저자B, 저자 C(특수관계인)임을 확인합니다.
	표와 그림은 저자 B에 의해 주로 작성되었습니다.
표절 및 이중게재 방지	표절 검사 프로그램 결과는 저자 C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어떤 문장이나 문단도 무단으로 표절한 부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논문 제목, 키워드, 주요 변수, 가설, 연구모형의 독창성을 보증합니다.
번역을 이용한 표절의 방지	한글 초록과 영문 Abstract 모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영문 번역 이전의 한글 원고로도 표절 검사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실증분석 연구윤리 위반 방	실증분석에 사용된 원본 데이터는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	표와 그림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를 잘 표기하였습니다.
짜깁기 표절 방지	본 보고서와 가장 유사한 선행연구는 ()입니다.
기계기 파일 3시	아이디어 제안은 저자 A가 하였고, 이를 저자 C가 보완하였습니다.

()년()월()일 위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저자 성명	저자 A	저자 B	특수관계인
확인 서명			

교무처장 귀하



연구윤리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문서번호	BSKS-1-1-40
제정일자	2008.05.20.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13/13

[별지 4]

공저자로서의 창작적 기여에 대한 실질적인 증명기준

- 1. 연구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개념)를 제시하였는가?
- 2.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하였는가?
- 3. 연구계획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데이터를 획득(실험, 측정, 인터뷰 및 설문조사, 관찰 등)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일을 실질적 으로 수행하여 저자로서 인정받을 만한 기여를 하였는가?
- 4. 자신이 생산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그 데이터의 생산방법 그리고 그에 대한 결론과 해석을 기술한 논문의 초안을 작성하였는가? 또한 이 내용이 논문의 최종본에 포함되어 있는가?
- 5. 투고 논문 초안에 대하여 중요한 지적인 기여(코멘트, 수정 및 보 완)를 하였는가?